

##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("정보관리") 업무

- 개인의 신용평점 개선, 금리인하 요구 등을 위한 **프로파일링 대응권\***의 대리행사 등 정보관리 업무를 부수업무로 허용

\* (예) 신용평가·금리산정 등에 활용된 기초정보의 확인 요구, 오등록 정보 정정 청구  
(상세 내용은 「**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(5.10)**」 p.14 참조) **(참고 1)**

- 이를 통해,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·CB사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요구, 이의 제기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

## ③ 데이터 분석·컨설팅 및 제3자 제공 업무

- 통합조회에 제공된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**재무현황, 소비 패턴** 등의 데이터 분석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와,

- 보유 데이터를 활용\*한 **빅데이터 분석 결과**를 금융회사, 창업기업 등 제3자에 제공하는 업무도 부수업무로 허용

\* 다만, 명시적인 동의를 한 고객 데이터에 한하여 제3자 제공을 허용

## ③ 겸영업무 : 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업무

### ① 「자본시장법」 상의 투자자문·일임업

- 이를 통해, 고객 본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**로보어드바이저** 방식의 금융투자상품 자문 등이 가능

### ② 「금융소비자보호법(안)」 상의 금융상품자문업

- 다만, 현재 금융상품 자문업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부재  
→ 우선, **금융상품 추천·비교공시**를 부수업무\*로 허용

\* 추후 자문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정비된 이후 **겸영업무**로 전환

※ EU에서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과의 겸영을 허용한 **지급결제 지시업(Payment initiation service)** 등 전자지급결제 업무도 관련 법령의 정비 추이를 보아가며 겸영업무 허용 여부를 검토

## 2 진입규제

◆ 자본금 요건 등은 최소화하여 다양한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되, 정보보호·보안, 산업생태계 측면을 감안, 진입규제를 설계

### 1 등록제 대신에 허가제를 도입

- 정보보호·보안, 경영·지배주주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가 필요한 점을 감안

※ ①핀테크산업 생태계 조성, ②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상충, ③과도한 정보집중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허가할 계획

### 2 자본금 요건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

-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5억원으로 설정하되,
  -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·관리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

### 3 인적·물적 허가요건

- **(인적요건)** CB업과 달리, 창의적인 Player에 의한 데이터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요건은 별도로 두지 않되,
  - CB·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, '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'은 반드시 두도록 하여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철저히 대비
- **(물적요건 등)**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설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·물리적 보안시설 등 구비

### 4 데이터산업에 창의적인 Player가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, 개인 CB업과 달리 금융기관 50% 출자의무 등은 두지 않음

### 3 고객정보 제공 의무화

◆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, 그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에게 고객정보의 제공을 의무화

① 정보주체에게 금융기관 등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(“개인신용정보이동권<sup>\*</sup>”)를 제도적으로 보장

\*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기관(금융회사 등)에게 본인정보(사본)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리

○ ‘정보주체’가 능동적으로 정보이동을 ‘요구’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정보활용 요청에 대한 수동적인 ‘동의’와는 구분

②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로 금융회사 등에는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고,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 접근이 가능

○ (의무 제공정보 범위) 통합조회·재무분석 등 원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\* 제공

\* (예) 소비패턴 분석 등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시계열 데이터도 제공할 필요

- 다만, ①민감정보\*, ②개인정보를 기초로 금융기관 등이 추가적으로 생성·가공한 2차 정보\*\* 등은 제외

\* (예) 보험금 지급정보 : 피보험자의 병력 및 사고이력 등을 포함

\* (예) CB사의 개인신용평점, 금융회사가 산정한 자체 개인신용평가(CSS) 결과

○ (정보 제공방식) 금융회사 등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표준화된 전산상 정보 제공방식(표준 API<sup>\*</sup>)을 이용

\*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: 표준화 작업을 위해 금융회사·마이데이터사업자 및 금융보안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

- 원칙적으로 은행·카드사 등 개별 금융사 등에 API 구축 의무를 부여하되, 규모·거래빈도 등을 감안하여 중계기관<sup>\*</sup>도 활용

\* (예) 신용협동조합 등의 경우, 해당 중앙회 등이나 신용정보원 등